

---

# 일반논문

---

한국 민주화와 친일청산 문제 **박수현**

한국민주화운동의 이념사에 나타난 사회정의의 이해  
— ‘죽은 자들’과 ‘찢어진 자들’의 말에 대한 기억 **최치원**

미디어의 진화와 정당의 변화에 관한 탐색적 연구  
— 인터넷에 따른 정당의 목표 및 조직의 변화 **홍순식**

대학생들의 자기계발과 사회적 이슈에 대한 반응  
— 시간강사, 타임오프제, 교내 환경미화원 문제를 중심으로 **오찬호**

## 한국 민주화와 친일청산 문제

박수현

민족문제연구소

### 〈논문요약〉

이 글은 친일청산 문제와 한국 민주주의의 관계를 밝히는 데 초점을 맞추어 독재정권하의 친일세력의 실태, 민주화 과정에서의 친일청산 문제, 민주화 이후 친일청산운동의 성과와 과제 등을 살펴보았다. 해방 직후 친일청산은 반드시 필요한 민족적 과제였고 시대적 요청이었지만, 반민특위의 실패로 좌절되었다. 이후 친일세력은 독재정권을 뒷받침하며, 한국 사회의 지배세력으로 거듭났다. 친일세력은 장기간에 걸친 독재 기간 동안 모든 분야에서 핵심적 위치를 차지했다. 독재체제는 친일세력이 부활하는 강력한 보호막이었고, 친일세력은 독재체제를 강건하게 유지하는 토대였다. 이러한 점에서 친일세력의 존재는 한국 민주화의 장애요인이었으며, 친일청산은 민주적 가치를 포함하는 것이다. 그럼에도 민주화운동 과정에서 친일청산 문제는 주요 현안이 아니었다. 장기간의 독재에 따른 친일문제에 대한 국가 주도의 왜곡된 기억과 현실과의 괴리, 현상적인 반독재투쟁에 머물 수밖에 없었던 한국 민주화운동의 특성, 친일문제에 자유롭지 못했던 민주화운동 세력 내부의 한계 등이 그 원인이었다.

결국 반민특위가 실패한 이후 친일청산 문제는 오랜 잠복기를 거쳐 1987년 6월항쟁 이후 민주화의 진전과 함께 다시 대두되었다. 이른 ‘제2의 친일청산운동’은 민주화운동의 산물이었고, 운동의 방향도 이미 오랜 세월이 지났기 때문에 인적·제도적 청산보다는 진상규명을 통한 역사

적 청산에 중점을 두었다. 그 성과는 컸다. 그러나 그 성과가 현재까지는 민주주의 발전의 계기로 작동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여기에는 한국 민주주의의 구조적 문제가 원인이지만, 최근의 친일청산운동이 갖고 있는 특성, 즉 해방 직후에 해결되지 못한 과제를 해결하는 데 역점을 둔 나머지 반민특위 와해 이후의 친일청산 문제를 소홀했던 것도 한 원인이었다. 따라서 친일청산이 내포하고 있는 민주적·평화적 가치를 확산시키고 사회화하는 일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 **주요어:** 친일파, 친일청산운동, 친일인명사전, 한국 민주화운동, 민주주의

## 1. 머리말

이 연구는 친일청산 문제가 한국 민주주의 발전에 어떠한 위상과 의미를 지니고 있는가를 밝히는 데 목적을 두었다. 지금까지 친일문제가 해방 이후에 미친 영향에 대해서는 개설이나 논설 수준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그 이유는 반민특위가 좌절된 이후 오랜 세월 동안 친일문제는 공론화는 물론 연구 자체가 금기시되었기 때문이다. 일제강점기 친일세력의 행적조차 연구가 제한된 상황에서 해방 이후의 친일세력의 동향을 구체적으로 분석하는 일은 거의 불가능했다. 민주화 이후 본격적으로 친일 문제가 이슈화되면서 학계의 연구가 활발해졌지만, 주요 관심사는 일제강점기의 행적이었고, 해방 이후의 동향은 반민특위 연구 과정에서 해방 직후 친일세력의 동향을 언급하는 정도였다.<sup>1)</sup> 최근 발간된 『친일인명사

1) 대표적인 연구 성과로는 이강수(2003)와 허종(2003)의 연구를 들 수 있다.

전』은 친일인물에 관한 기록을 집대성한 성과물로서 해방 이후의 행적까지 포함하고 있다. 이를 통해 해방 이후 친일세력의 동향을 파악할 수 있게 되었지만, 사전 내용을 분석한 연구는 아직 없는 실정이다.

해방 이후 친일세력과 독재정권과의 연계성, 민주화와 친일청산 문제의 상관관계를 구체적으로 밝히는 연구는 초보적인 수준이다. 이러한 연구를 가능케 한 것은 최근의 『친일인명사전』,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이하 반민위원회)’·‘친일반민족행위자재산조사위원회(이하 재산조사위원회)’의 보고서와 백서 등 친일문제에 대한 종합적 결과물이었다. 이러한 성과들이 친일청산의 완결적 의미를 갖는 것은 아니지만, 적어도 미해결 과제로 남아 있던 친일청산 문제를 일단락지었다는 점에서 친일 문제를 다양한 각도에서 분석할 수 있는 토대가 되었다.

이 글은 이러한 성과를 토대로 해방 직후 청산되지 못한 친일세력이 독재 권력을 뒷받침하면서 광범한 세력을 형성했다는 점, 그럼에도 오랜 민주화운동 과정에서 친일청산 문제가 쟁점화되지 못했던 원인이 무엇인지를 살펴보는 데 중점을 두었다. 아울러 민주화 이후 친일청산운동의 성과와 과제를 통해 한국 민주주의 발전에 있어 친일청산 문제가 차지하는 위상을 살펴보고자 했다. 다만 해방 이후 민주주의 발전을 가로막은 친일 잔재는 제도·사상·문화 등 다방면에 걸쳐 있었음에도, 주로 친일세력에 초점을 맞추었다. 또한 친일세력과 독재체제의 필연적 관계를 해명하기 위해서는 친일세력이 독재체제에 어떠한 정책과 방법으로 영향을 미쳤는가에 대한 실증적 분석이 필요하지만, 여기서는 전체적인 인적 지배구조와 분포에 중점을 두었다.

이 글에서 언급하는 ‘친일파’ 또는 ‘친일세력’에 대한 규정은 해방 직후부터 다양한 논의들이 있어왔지만, 최근에 발간된 『친일인명사전』이 10여 년에 걸쳐 많은 학자들의 논의와 검토를 거친 끝에 공간되었다는 점을 고려해 그 수록자를 대상으로 했다.<sup>2)</sup>

## 2. 해방 직후의 친일청산 문제

일제의 통치는 기본적으로 동화와 민족말살을 목표로 한 민족적 차별과 억압, 사상 통제와 인권탄압, 경제적 수탈을 특징으로 한 체제였다. 이러한 특징은 전시기에 걸쳐 나타났지만, 그중에서도 가장 극명하게 드러난 시기는 중일전쟁 이후였다. 이 시기는 이른바 전시 파시즘기로서 일제가 전시동원체제로 전환하면서 극단적인 민족말살정책과 함께 반인륜·반평화·반인권적인 수탈과 강제동원이 노골적으로 이루어졌다. 친일세력의 활동이 가장 활발했던 것도 이 시기였다. 일제 말기 파시즘체제가 견고하게 유지될 수 있었던 데에는 무엇보다 친일세력의 역할이 컸다. 관계, 정계, 재계, 법조계, 교육계, 언론계, 경찰, 군 등 모든 분야에 걸쳐 광범하게 형성된 친일세력들은 파시즘체제에 순응해 일제의 침략전쟁에 협조하고 대중들의 전쟁협력을 이끌어내는 데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했다.

당연히 해방 직후 친일청산의 대상과 근거도 일제 말기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었다. 당시의 친일규정들은 일제의 한국병합 과정에서 나타난 매국행위를 제외하면, 대부분 1937년 중일전쟁 이후부터의 행각이 주축을 이루고 있었다(임현영 2000, 105). 그 이유는 일제의 억압이 가장 심했고 대다수 사람들에게 친일의 실존적 기억이 가장 강하게 남아있던 시기

- 
- 2) 『친일인명사전』의 선정기준은 “을사늑약 전후부터 1945년 8월 15일 해방에 이르기까지 일본 제국주의의 국권침탈·식민통치·침략전쟁에 적극 협력함으로써 우리 민족 또는 타민족에게 신체적, 물리적, 정신적으로 직·간접적 피해를 끼친 자”로서 “반민족행위자 전부와 부일협력자 상층부”를 대상으로 했다. 특히 부일협력자 중 “일정한 직위 이상은 그 지위에 대한 책임을, 지식인과 문화예술인의 경우는 그 사회적 책임을 엄중히 묻는다는 취지에서 수록대상”으로 했다. 즉 수록대상자는 개인의 직접적인 행위와 개인의 지위·역할(직무) 두 가지를 함께 고려했다. 크게 “일제의 국권침탈에 협력한 자, 일제의 식민통치기구에 참여한 자, 항일운동을 방해한 자, 일제의 침략전쟁에 협력한 자, 지식인·종교인·문화예술인으로서 일제의 식민통치와 침략전쟁에 협력자”가 그 대상이다(민족문제연구소·친일인명사전편찬위원회 2009 1권, 21-22).

였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무엇보다도 해방 직후 친일청산이 살아 있는 친일세력에 대한 법적 처단이 주목적이었다는 점에서 일제 말기의 행위가 중요했다. 이에 대해 친일세력과 이들을 옹호하는 자들은 일제 말기의 친일행위는 본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전시동원체제하의 노골적인 탄압과 강요로 이루어진 외압일 뿐이라는 논리를 내세웠다. 나아가 그 누구도 친일문제에 자유롭지 않은 시대적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지도층이나 유력자들을 친일파로 취급하는 것은 정치적 목적을 지닌 좌익들의 불순한 의도라는 주장까지 펼쳤다. 그러나 이들의 주장은 친일행위를 축소·은폐하고 친일청산 논의 자체를 무력화시키려는 의도일 뿐, 친일행위가 전적으로 외압 때문이었다는 근거는 대단히 취약했다.

우선 일제 말기 중추원 참의, 관료, 판·검사, 군 장교, 경찰 간부 등과 같이 일정 지위 이상의 조선인 공직자들은 그 지위만으로도 전시파시즘 체제를 강화하고 식민정책을 집행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한 자들이었다. 지위상 이들은 억압과 고통에 시달리는 대다수 조선인과는 대립되는 식민지 조선의 지배층으로서, 철저히 일제의 입장에서 조선인들을 지배하고 통제했다. 따라서 이들의 지위와 역할에 따른 책임은 실상 행위 못지않게 큰 것이었다. 역사적으로도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유럽이나 패전국 일본에서 행한 전범이나 협력자 처벌에는 지위와 책임에 따른 책임추궁이 엄중하게 이루어졌다. 그들이 가진 특정 지위와 역할 자체를 범죄로 간주했기 때문이다(민족문제연구소 2009, 145).<sup>3)</sup> 더욱이 일제 말기의 공직자들은 이전부터 장기간 공직을 수행하다가 승진했거나<sup>4)</sup> 끊임

- 
- 3) 다만 어느 정도의 지위를 청산 대상인 친일로 규정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다양한 논의가 있을 수 있다. 『친일인명사전』에서는 한 사회가 추구하는 사회윤리적인 기준이나 정의의 수준, 상식, 그리고 학술적 인식을 고려해 중추원의 부의장·고문·참의, 일본제국국회의 귀족원 의원·중의원 의원, 고등관 이상의 관리, 고등경찰과 경부 이상의 경찰, 위관급 이상의 장교, 판·검사 등을 지위와 역할에 따른 대상으로 삼았다(민족문제연구소 2009, 145-146).
- 4) 『친일인명사전』에 수록된 일제 말기 관료, 판·검사, 군 장교, 경찰 간부 등의 경력을 검토해 보면, 대부분 장기간 현직 생활을 한 자들이었고, 특히 고등관 이상의 관료와 경부 이상의

없는 노력을 통해 자격시험을 거쳐 신분 상승을 이룬 자들로서, 이미 일제의 지배체제에 깊숙이 편입된 자들이었다. 본인의 노력과 의지로 식민지 지배구조의 한 축으로 자리매김한 이들에게 강도 높은 전시 파시즘 정책을 수행하는 일은 본연의 임무와 역할일 뿐이었다. 이들은 강요와 탄압의 피해자라기보다는 가해자로 활동했다.

친일지식인 역시 전시 파시즘 체제를 유지하고 강화하는 데 큰 역할을 담당했다. 이들은 교육학술·언론·종교·문학·예술 등 각 분야를 대표하는 지식인들로 대중들에게 널리 알려진 명망가들이었고, 이들 중 일부는 한때 민족운동에 참여하기도 했다. 일제의 입장에서 보면, 일반 대중들을 선동하는 데 가장 효과적인 자들이었다. 이들은 일제의 정책을 홍보·선전하는 각종 언론매체나 좌담회·강연회에 항상 등장했다. 해방 직후는 물론이고 최근까지도 친일문제가 나올 때마다 논란의 중심이 된 것도 이들이었다. 이들을 옹호하는 자들은 일제 말기의 행위는 단지 명망 때문에 강제로 동원되었을 뿐이고, 글이나 강연회·좌담회의 내용 역시 본인의 의지와 상관없었다는 것이다.

그러나 여러 연구 성과를 통해서도 드러났듯이, 이들의 행위는 강요보다는 내재된 현실 인식에서 비롯된 측면이 컸다. 친일지식인들은 만주 사변과 중일전쟁을 겪으면서 점차 일본의 힘에 압도되었다(이준식 2005, 110-112). 특히 중일전쟁이 이들에게 큰 영향을 미쳤다. 정도의 차는 있지만 대부분의 친일지식인들은 이광수의 경우처럼 장구한 세월 동안 동아시아의 패자로 군림해 온 강대한 중국을 침략해 초반에 승승장구하는 일제의 힘에 큰 충격을 받고, 아시아의 중심은 이제 일본이라는 인식을 하게 된 것이다.<sup>5)</sup> 이러한 인식은 자연스럽게 독립불능론으로 이어졌다.

---

경찰간부는 말단부터 시작해 승진한 경우가 가장 많았다.

5) 이광수는 중일전쟁을 세계역사에 '신기원을 획(劃)할 만한 대사건'이자 '고집 센 내 마음의 문을 열어준' 사건으로 평가했으며, 아시아의 장래 운명을 결정짓는 사건으로 보았다(이광수 지음, 김원모·이정훈 편역 1997, 17-18).

세계의 중심이 된 일본을 상대로 독립을 쟁취하는 것은 불가능하고 차라리 일본제국의 일원이 되는 것이 조선을 위한 길이라는 인식이었다. 그리고 이러한 인식이 내재화되면서 조선과 일본은 공동운명체라는 인식을 갖게 되었다. 일제가 패망할 때까지도 친일행위가 이어졌던 것은 이러한 인식이 바탕이 된 것이다.

여기에 내선일체(內鮮一體)의 전면화는 많은 지식인들이 적극적인 친일의 길로 나가는 계기가 되었다. 조선인과 일본인이 민족적, 정치적, 경제적 차별이 없는 똑같은 천황의 신민이 되어야 한다는 내선일체의 논리는 독립의 희망을 접은 많은 지식인들이 추구하던 바로서 자신들의 친일을 정당화하는 논리이기도 했다. 더 이상 조선의 독립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내선일체야말로 조선의 장래와 행복을 위한 최선의 길이라는 인식이었다. 내선일체는 친일지식인뿐만 아니라 모든 친일세력이 적극적으로 수용한 논리였다. 아무리 노력해도 일본인과 조선인이라는 민족차별의 벽을 넘을 수 없었던 이들에게 구체적 실행방안까지 내세운 내선일체는 그동안 극복하기 힘들었던 민족차별에서 벗어나 진정한 제국의 신민이 될 수 있다는 ‘차별로부터의 탈출 논리’였다(宮田節子 1997, 156-164).

무엇보다도 친일행위의 출발점은 독립은 불가능하다는 현실 인식이었다. 이들은 공개적으로 수많은 친일행위 근거를 남겼다.<sup>6)</sup> 강요에 따른 마지못한 행위라고 하기에는 너무 구체적이고 노골적인 내용이 많았다. 과연 독립에 대한 희망과 기대가 있었다면 공인·지도층으로서 장차 큰 오점이 될 수 있는 많은 증거자료를 남기면서까지 적극적으로 일제에 협력할 수 있었을까? 해방과 새로운 독립국가에 대한 전망을 포기한 대신 일본을 자신들의 국가로 받아들이고, 자신들의 행위가 범죄가 아닌 국가를 위한 충성이라고 믿었기에 가능한 일이었다. 시간이 지날수록 전황이 일본에 불리해지고 있었고, 세간에서도 일제 패망에 대한 ‘유언비어’가

---

6) 신문·잡지 등에 게재된 친일 글에 대해서는 박수현(2006, 168-176) 참조.



크게 확산되는 상황에서도, 이들이 지속적으로 황민화와 전쟁협력을 외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이러한 현실 인식 때문이었다.

이러한 점에서 일제 식민통치의 잔재와 친일세력은 해방 직후 새로운 독립국가 건설에 있어 반드시 청산해야 할 대상이었다. 특히 해방 직후에도 광범하게 존재한 친일세력에 대한 청산은 시급히 해결해야 할 민족적 과제였고, 새로운 사회를 갈망하는 대다수 민중들의 요구였다. 사회 분위기도 친일파는 반드시 청산되어야 하고 또 청산될 것이라는 당위성과 기대감으로 팽배해 있었다. 각 단체들도 소략하나마 규정·강령·성명서 등을 통해 친일파의 개념, 범주, 처벌 내용 등에 대한 규정들을 쏟아냈다.<sup>7)</sup> 명칭부터 ‘친일파’, ‘친일분자’, ‘매국노(賣國奴)’, ‘부일협력자(附日協力者)’, ‘민족반역자’ 등 다양한 용어가 사용되었으며, 처벌규정도 각기 달랐다. 충분한 논의나 검토보다는 친일파 청산에 대한 사회적 욕구를 앞다투어 반영한 결과였다.<sup>8)</sup>

친일청산에 대한 거센 요구는 정부 수립 직후인 1948년 9월의 「반민족행위처벌법」(이하 반민법) 제정과 반민특위 조직으로 이어졌다. 개혁

- 
- 7) 정부 수립 이전까지의 주요 단체·정당의 친일파에 관한 규정안을 열거하면 다음과 같다. 조선인민공화국의 전국인민대표대회 소집요강(1945/11/24)과 중앙인민위원회의 규정(1946/01/30), 민주주의민족전선의 규정(1946/02/16), 미군정 법령 제118호 「남조선과도입법의원 창설령」(1946/08/24), 미군정 법령 제126호 「도 및 기타 지방의 관공리, 회의원의 선거」(1946/11/15), 민주주의민족전선의 지방선거 행동강령의 규정(1947/01/22), 경성법조회의 「부일협력자, 민족반역자 규정안」(1947/04/14), 임시정부수립대책협의회회의 미소공위 공동결의 6호 답신(1947/06/12), 민주주의민족전선의 미소공위 공동결의 6호 답신(1947/06/12), 북조선 노동당의 미소공위 공동결의 6호 답신(1947/06/12), 남조선과도입법의원의 「부일협력자 민족반역자 전범 간상배에 대한 특별법률조례」 초안(1947/03/17), 남조선과도입법의원의 「민족반역자 부일협력자 간상배에 대한 특별법률조례」(1947/07/02), 미군정 법률 제5호 「입법의원 선거법」(1947/09/03), 미군정 법령 제175호 「국회의원 선거법」(1948/03/17) 등이다.
- 8) 해방 공간에서 각 단체들이 만든 친일규정들을 종합해 보면 대개 다음과 같은 범주의 친일파 기준을 도출할 수 있다. ① 작위·관료 등 지배계층에 종사한 행위, ② 군·경찰 등이 직·간접으로 행한 민족 탄압 행위, ③ 사회 저명인사로 여론 등을 통해 반민족적 영향력을 행사한 행위, ④ 경제적으로 민족에 해를 끼친 행위, ⑤ 국가주권 침탈에 관여한 행위 등이다(임현영 2000, 104).

세력의 선거 불참으로 이승만과 한민당 세력이 다수 의석을 차지한 제헌 국회에서 반민법이 제정될 수 있었던 것은 무소속 중심의 소장파 의원들의 노력이기도 했지만, 무엇보다 새 국가 건설에 있어 반드시 친일청산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사회적 분위기와 당위성 때문이었다. 제헌국회 헌법기초위원회 소속의 유진오가 반민족행위자 처벌을 위한 특별법 근거 규정이 추가된 것에 대해 “누가 그것을 먼저 주장하고 나섰던지는 지금 기억이 없으나 그때의 정세로는 누구든지 그것을 주장하기만 하면 아무도 반대할 수 없었다”고 한 증언(이강수 2003, 103)은 당시의 분위기를 충분히 짐작케 하는 대목이다.

그러나 여전히 친일세력이 득세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들을 단죄하기<sup>9)</sup> 위해서는 반민특위 주도세력의 힘이 강하거나 정권의 의지가 있어야 가능한 일이었다. 당시의 반민법과 반민특위는 시대적 요청에 부응해 탄생했지만, 그 주도세력은 소수에 불과했고 반대세력을 제압할 만한 힘을 지니지 못했다. 이 때문에 반민특위 내부의 조사위원 간에도 입장이 달랐고, 조사활동에 있어서도 군·법조·종교·교육학술·문화예술 분야 등에서 사회적 영향력이 컸던 인물에 대한 조사는 제대로 이루지지 않은 채 널리 알려진 친일파나 일반인의 원성이 높았던 친일경찰 위주로 활동이 이루어졌다. 그나마도 이승만 정권과 친일세력의 방해 책동이 본격화된 이후에는 조사활동이 급격하게 줄어들었다. 반민특위는 10개월 남긴 활동 기간에 688명을 취급했으며, 이 중 293명만을 기소했다. 293명 중 특별재판부가 해체되기 전에 판결을 받은 자는 78명, 미결인 자는 215명이다. 그러나 78명에 대한 판결도 1951년 2월 반민법과 관련된 모든 판결을 무효화하는 법률이 제정되어 그 효력이 없어졌다(허중 2003, 296-301;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 2009 III-1, 135-144).

9) 반민법은 사형·징역형·금고형 등의 신체형, 재산몰수형, 공민권·피선거권 등의 공민권 제한 등 가능한 방식이 모두 포함되었다.

여기에 이승만 정권의 권력 기반은 친일세력이었다. 친일세력의 권력화는 이미 미군정기부터 진행되었다. 친일세력들은 반공을 최우선으로 하는 미군정에 편승해 애국자 행세를 하며 각 분야에서 다시 득세하기 시작했고, 정부 수립 이후에는 이승만 정권의 기반으로서 권력의 중심을 이루고 있었다. 반민특위 해체공작의 최전선을 담당한 것도 이들이었다. 친일청산이 당면한 민족적 과제였고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었다 하더라도 이승만정권의 주요 기반이 친일세력인 이상 반민특위의 실패는 예견된 것이었다.

이들은 반민법 제정 당시부터 집요한 방해공작을 펼쳤고 대중들을 상대로는 여론몰이를 통해 친일청산운동을 반대했다. 반민법이 공포된 1948년 9월 23일 반민법 반대 국민대회가 서울운동장에서 개최되었고,<sup>10)</sup> 대회장 곳곳에는 “반민법은 반장이나 통장까지 잡아넣을 수 있게 되어 있어 온 국민을 그물로 움아매는 망민법(罔民法)”, “이런 민족분열의 법률을 만든 것은 국회 안에 있는 공산당 프락치의 소행이다”, “국회 내의 김일성 앞잡이를 숙청해야 한다”는 삐라가 뿌려졌다. 또 국민대회에 나오지 않으면 ‘빨갱이’로 간주한다며 시민들을 강제 동원하기도 했다(이강수 2003, 157-159; 제헌국회속기록 1948/08/27, 1948/09/24). 1949년 2월에는 노덕술을 비롯한 친일경찰 출신의 경찰간부들이 반민특위 조사관 암살계획까지 세우기도 했으며, 각 지역 반민특위조사부에 대한 협박을 자행했다. 정권 실세를 비롯한 지도층들의 반민피의자에 대한 증언과 변호·탄원도 계속되었다. 이러한 정권차원의 조직적인 방해 행위는 반민특위의 해체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반공논리를 앞세운 조직적인 반대운동은 혼탁한 정국 속에서 친일청산의 대의명분까지 약화시키면서 상당

10) 이 대회는 정부가 직접 관여한 행사였다. 대회장에서 이승만대통령의 축사가 낭독되었으며, 국무총리 이범석과 상공부장관 임영신 등이 참석했다. 또 내무부장관 윤치영은 “해방 이후 처음 보는 애국적 대회”라고 찬양하는 방송까지 했다(이강수 2004, 40).

수의 대중들을 이탈하게 만들었고, 결국 반민특위의 활동은 크게 위축되면서 해체에 이르게 되었다. 해방 이후 당연히 이루어져야 할 친일청산이 반공논리를 앞세운 이승만 정권과 친일세력의 방해에 막혀 법적 처단은 고사하고 최소한의 도덕적·윤리적 책임조차 묻지 못하게 된 것이다.

반민특위를 와해시킨 이승만 정권은 이후 반공을 앞세워 독재체제를 강화해 나갔다. 이승만 정권의 독재체제가 강화된 데에는 권력의 기반인 친일세력이 큰 영향을 미쳤다. 이미 일제 말 파시즘체제의 강한 국가권력에 의존해 생존방식을 터득한 친일세력들이 다시 권력을 유지하며 살아남는 방법은 강력한 독재체제였다. 친일세력이 어떠한 구체적인 방식으로 독재체제에 영향을 미쳤는가에 대해서는 연구가 필요하겠지만, 이들이 독재정권하에서 권력을 장악하고 있었다는 사실만으로도 독재체제를 유지·강화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했다는 것은 충분히 짐작할 수 있다. 결과적으로 해방 직후 친일청산의 좌절은 독재체제가 강화되는 계기가 되어 한국 민주주의 발전에도 심각한 악영향을 미쳤다.

### 3. 친일세력의 지배구조화

친일세력은 해방 이후에도 여전히 득세했다. 일제가 패망했어도 그들의 위상이나 영향력은 큰 변화가 없었다. 미군정의 시작과 함께 살아나기 시작한 이들은 정부 수립 이후 장기간 독재체제가 지속되는 동안 각 분야를 장악하며 한국사회의 지배세력으로 거듭났다. 다음의 표는 『친일인명사전』에 수록된 친일인물 중 해방 이후의 주요 인물들을 추출해 각 정권별로 정리한 것이다. 해방 이후의 행적이 확인되는 자는 총 수록자 4,389명 중에서 1,100여 명인데, 그 중에서도 해방 이후의 지위·직책을 기준으로 각 분야의 핵심적인 위치에 있는 인물만을 선별했다. 동일

〈표 1〉 미군정기 주요 친일인사

분야	지위·직책	이름
행정 사법	국(부)장· 도지사	김홍식(광공), 민규식(조선은행 총재), 유억겸(문교), 이용설 (보건후생), 구자옥(경기), 김대우(경북), 김병규(경남), 윤하영 (충북)
	법원장· 대법관	김동현(대구고법원장), 김윤근(특별재산심판소 재판장), 서광설(대법원 재판관), 서정국(청주지법 재판장), 이명섭 (서울고등심리원장), 이상기(대법관), 조용순(대전지법 재판장)
검찰 경찰	검찰 간부 (검사장 이상)	구자관(서울공소원 검사장), 김용찬(대법원 검사장), 민병성 (청주지법 검사장), 박승유(경성지법 검사장), 박성대(부산 지법 검사장), 박종훈(제주지법 검사장), 백한성(대전지법 검사장), 오완수(대구지법 검사장), 최대교(전주지법 검사장)
	경찰 간부 (서장 이상)	강낙중(서장), 강덕호(치안관), 강보형(경찰국장), 계인주(서장), 권위상(서장), 김광호(경찰학교 부교장), 김상규(서장), 김상봉 (총감), 김성균(수도경찰학교장), 김영석(서장), 김영주(서장), 김용조(전북경찰국장), 김정제(서장), 김정호(수도경찰학교장), 김형진(수도경찰학교장), 김호우(서장), 노기주(경남 경찰부장), 노덕술(수도관구 수사과장), 노주봉(전남도경찰부장), 박승관 (전남경찰청장), 박을수(서장), 서기영(서울경찰학교장), 손석 도(서장), 신상묵(서장), 안익조(서장), 연성희(서장), 오세기(서 장), 오영세(총남 경찰부장), 유금렬(경남 수사과장), 유인근(경 남 경무과장), 유태훈(강원 경찰부장), 이구범(서장), 이두환(서 장), 이명흠(서장), 이범승(서장), 이원우(서장), 이정용(서장), 이 중수(서장), 이진하(서장), 이형석(제주경찰청 부장), 정기창(서 장), 조병계(전북 경찰청장), 조재천(철도관구 경찰청장), 천규문 (서장), 최경진(경무국장), 최령(중앙경찰청장), 한승린(경기 정 보과장), 한종건(경무부 차장), 함대훈(경찰전문학교장), 홍낙구 (전남 경찰청장), 홍병식(수도경찰청 보안과장), 홍순봉(공안국 공안과장), 황태근(강원경찰학교장)
대학	대학총(학)장	김성수(보성전문), 김활란(이화), 백낙준(연희대), 임숙재(숙명여전), 허영호(동국), 현상윤(고려)
	학교이사장	김길창(동아대), 김석원(성남학원), 김원근(청주상과대학), 서병조(대륜재단), 조동식(상명학원), 홍사훈(화성학원)
	대학교수	계정식(서울), 고광만(대구사대), 고승제(연희), 권상로(동국), 김갑수(경성), 김동하(동국), 김상용(이화), 김생려(서울), 김성 태(서울), 김영수(동국), 김원복(서울), 김인승(이화), 김준보(서

교육 언론	대학교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울, 김천애(서울대), 김택원(경성사범), 노수현(서울), 박승하(건국), 박윤진(동국), 박이순(국민), 박재섭(고려), 백철(서울), 부완혁(고려), 손정규(서울), 신기석(서울), 신석호(고려), 심형구(홍익), 엄구현(동아), 유진오(고려), 윤길중(국민), 이인기(서울), 이해구(서울), 이흥렬(서울), 임동혁(이화), 장우성(서울), 정인섭(중앙), 최문경(국민), 현제명(서울), 황종률(연희)</li> </ul>
	중·고교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고황경(경기여고), 권현섭(안동중), 김영훈(대전공고), 김처순(부산여고), 김흥수(원예전수학교), 맹건호(문산농중), 박관수(서울산중), 박용섭(농잠중), 박철(청주여중), 배상명(상명여상), 변홍규(감리신학교), 서극형(나주원예학교), 송금선(덕성여중), 송찬근(조선신학교), 신봉조(이화여고), 안용백(부산중), 이숙중(성신여중), 이종국(광주사범), 이항녕(양산중), 장면(동성상고), 정구충(경성의전), 정인택(대전중), 차남하(목포상고), 차사백(무학여중), 최동(세브란스), 황신덕(중앙여중고), 황운성(진주중)</li> </ul>
	언론사 대표·간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강이황(서울신문 감사), 김성수(동아일보 사장), 김승식(조선통신사 사장), 김억(중앙방송국 부국장), 김형원(조선일보 편집국장), 김홍식(인천신문사 사장), 박암(대구시보 논설위원), 방응모(조선일보 사장), 서강백(서울신문 편집부장), 서정주(동아일보 문화부장), 양재하(한성일보 발행인), 여운홍(민보사 사장), 유광렬(자유신문 논설위원), 이금중(상공신문 사장), 이해구(서울중앙방송국장), 장덕수(동아일보 취체역), 정비석(중앙신문 편집부장), 정인익(자유신문 발행인), 조연현(민국일보 사회부장), 주요한(국민신문 편집국장), 함대훈(한성일보 편집국장), 홍승구(국민일보 편집국장), 홍종인(조선일보 편집국장)</li> </ul>

〈표 2〉 이승만 정권기 주요 친일인사

분야	지위·직책	이름
행정 사법 입법	국무총리	김성수(부통령), 장면
	장관	김일환(내무), 김정렬(국방), 김형근(내무), 백낙준(문교), 백한성(내무), 신태영(국방부), 유진오(법제처), 윤치영(내무), 이계록(농림), 이응준(체신), 이호(법무), 인태식(재무), 임문환(농림), 장경근(내무), 정낙훈(농림), 조용순(법무), 조진만(법무), 홍진기(내무)
	차관·도지사	갈홍기(외무), 고광만(교육), 김갑수(내무), 김원태(내무), 김윤근(법무), 김일환(국방), 김장섭(내무), 김학응(충남), 김활란(공보처장), 민복기(법무), 박암(외무), 박종식(재무), 이명구(충북), 이해익(경기), 임관호(제주), 임적란(법무), 정인택(충북), 정재환(법무), 주석균(농림), 한희석(내무), 홍진기(법무), 홍현표(내무)
	법원장·대법관	계창업(대법관), 고재호(대법관), 김갑수(대법관), 김동현(대법관), 김두일(대법관), 김세원(대법관), 김우열(서울고법원장), 나항윤(대법관), 남정숙(춘천지법원장), 노용호(대법관), 방준경(대법관), 백한성(대법관), 변옥주(대법관), 사광옥(대법관), 손동욱(대법관), 송문현(인천지법원장), 유현열(대전지법원장), 윤철균(대구지법원장), 이화중(청주지법원장), 임석규(광주지법원장), 임한경(서울고법원장), 장경근(서울지법원장), 장기성(대구고법원장), 조용순(대법원장), 최병주(대법관), 최윤모(대법관)
	국회의원	계광순(민주당), 김갑수(무소속), 김동원(민주당), 김선태(민주당), 김연선(무소속), 김원태(자유당), 김정호(자유당), 박용익(자유당), 서범석(민주당), 성원경(자유당), 신용욱(자유당), 안용대(무소속), 안용백(자유당), 양재하(무소속), 여운홍(무소속), 윤길중(무소속), 윤치영(대한국민당), 윤희남(민주당), 이공중(무소속), 이범승(무소속), 이석기(무소속), 이용설(무소속), 이재학(자유당), 이종린(무소속), 이종욱(무소속), 이종준(자유당), 이태용(자유당), 이한창(자유당), 이항발(무소속), 인태식(자유당), 임문석(민주당), 임흥순(자유당), 장경근(자유당), 장면(무소속), 정낙훈(자유당), 조재천(민주당), 주요한(민주당), 진형하(민주당), 최병주(무소속), 한동석(자유당), 한희석(자유당), 허영호(무소속), 현석호(자유당)
	기타	김두일(중앙선거관리위원장), 김흥식(민국당 최고위원), 신흥우(대한체육회장), 양주삼(대한적십자사총재), 임흥순(서울시장), 전예용(한국은행 부총재), 조용순(중앙선거관리위원장), 최하영(심계원 원장)
		강태민(군수사령부 부사령관), 계인주(육군첩보부대장), 김대식(해병대사령관), 김동하(해병대참모장), 김석범(해병대사령관),

군 검찰 경찰	군	김석원(수도사단장), 김응조(2군 정보처장), 김일병(해군참모차장), 김정렬(공군참모총장), 김찬규(제1군단장), 김창룡(방첩대장), 김종남(해군참모차장), 노덕술(1사단 헌병대장), 박원석(공사부교장), 백선엽(육군참모총장), 석주암(육군헌병사령관), 송석하(육본 작전참모부장), 신봉균(해병대사령관), 신상철(공사교장), 신태영(육군참모총장), 양국진(제3군단장), 원용덕(헌병총사령관), 유재홍(제1군사령관), 이용문(수도사단장), 이응준(육군참모총장), 이종찬(육군참모총장), 이한림(육사교장), 이형근(육군참모총장), 임충식(제6군단장), 전봉덕(헌병사령관), 정일권(육군참모총장), 채병덕(육군참모총장)
	검찰 (검사장 이상)	김유수(부산지검 검사장), 김장섭(서울지검 검사장), 김형근(서울지검 검사장), 민복기(검찰총장), 박승준(검찰총장), 서정국(서울지검 검사장), 소진섭(부산지검 검사장), 양정수(광주지검 검사장), 오성덕(대구지검 검사장), 이병용(대전지검 검사장), 이태희(서울지검 검사장), 임적란(대구지검 검사장), 정재환(대전지검 검사장), 정창운(서울고검 검사장), 최대교(서울지검 검사장)
	경찰 (서장 이상)	강덕호(치안관), 강원생(경감), 박두금(서장), 권만진(서장), 김맹철(서장), 김상봉(치안국 부국장), 김영석(서장), 김영주(서장), 김정제(치안국 보안과장), 김종규(서장), 김호우(충남 경찰국장), 박기남(서장), 박재원(서장), 서기영(서울경찰학교장), 성봉규(서장), 신상목(강원 경찰국장), 연성희(내무부 총경), 이구범(수도경찰청 부국장), 이두환(충북 사찰과장), 이명흠(치안국 총경), 이상렬(경찰전문교장), 이원우(충북경찰학교장), 이정남(서장), 이정용(경북 경찰국장), 이종국(국립경찰전문 교장), 이종수(서장), 장두만(치안국 경무관), 홍병식(치안국 보안과장)
교육 언론 기타	대학총(학)장	권상로(동국), 김두현(전북), 김활란(이화), 백낙준(연세), 송금선(덕성), 유진오(고려), 이명직(서울신학), 임숙재(숙명), 정재환(동아), 조동식(동덕), 최문경(국민)
	학교이사장	갈홍기(동명학원), 구연직(세광중고), 김갑수(경기·동국학원), 김경진(동주학원), 김원근(청주대), 김석원(원석학원), 오문환(계명익숙), 이명서(성균관대), 이숙중(성신학원), 이종욱(동국대), 정재환(동아학숙), 최동(동은학원), 최창학(오산중고), 홍사훈(화성학원)
	대학교수	갈홍기(숙명), 계철순(동아), 고광만(서울), 고승제(서울·고려), 고헌경(이화), 광종원(숙명), 김경승(홍익), 김동진(숙명), 김동하(동국), 김상용(이화), 김생려(경희), 김성균(국학), 김성태(서울), 김영수(전북), 김인승(이화), 김정록(서울), 김준보(서울), 김창균(충남), 김치순(부산), 김천애(서울), 남흥우(고려), 노수현(서울), 노용빈(성균관), 박관수(경북), 박마리아(이화), 박승하(건국), 박영선(이화), 박윤진(동국), 박이순(국민), 박일경(서울), 박재섭



		(고려), 배철세(동아), 백철(중앙), 변재성(동아), 서은숙(이화), 서정주(서라벌), 손응성(홍익), 손정규(서울), 신기석(중앙), 신석호(고려), 안중화(서라벌), 엄구현(동아), 엄민영(경희), 윤강로(이화), 윤태림(서울), 윤희중(홍익), 이광래(서라벌), 이봉상(홍익), 이사목(동아), 이상범(홍익), 이인기(서울), 이종국(중앙), 이태희(이화), 이항녕(고려), 이해구(서울), 이흥렬(서라벌), 장우성(서울), 정안섭(중앙), 조용만(고려), 지성렬(조선), 채필근(부산, 최재서(연세), 한노단(동아), 한봉세(동아), 한응길(중앙), 현제명(서울, 흥헌표(성균관), 황운성(진주농), 황중률(동국)
중·고교장		곽기중(능인중고), 김경승(풍문여고), 김규승(이리상고), 김영훈(서울사대부고), 김우현(창신중), 김응순(보합공민), 김홍수(부산원예고), 맹건호(경기중), 박관수(울산농고), 배상명(상명여고), 신봉조(이화여고), 안용백(경남중), 김석원(성남고), 양봉화(호남국립원예중), 이봉구(여주여중), 이사목(부산여상), 이석구(장항농고), 이소영(낙양공고), 이종준(부산상고), 장석윤(의정부중고), 조기홍(창덕여중고), 조재호(경기고), 차사백(무학여고), 함석욱(진주상고), 황신덕(중앙여중고), 황운성(진주농고)
언론사 대표·간부		강병순(동아일보 감사), 김상용(코리아타임즈 사장), 김성균(동양신문사 주필), 김승식(한국통신사 사장), 김영선(경향신문 논설위원), 김형근(서울신문사 사장), 김활란(코리아타임즈 사장), 노창성(서울중앙방송국장), 부완혁(조선일보 논설위원), 유광렬(동아일보 논설위원), 이영근(서울신문 취체역), 이원영(충북신문 부사장), 이종극(동아일보 논설위원), 이해구(서울중앙방송국장), 임응길(동아시보 사장), 장덕조(대구매일신문 문화부장), 조용만(서울신문 논설위원), 홍종인(조선일보 주필)
기타 (문화·예술·종교)		김생려(서울교향악단장), 김영일(아동문학회장), 김원복(예술원), 노천명(국제펜클럽 한국대표), 박마리아(YWCA회장), 박원찬(중앙총무원장), 오공선(대한성서공회 이사장), 유각경(대한부인회 최고위원), 유진오(예술원), 유치진(국립극장장), 윤희중(예술원), 이광래(예술원), 이상범(예술원), 이종욱(총무원장), 조연현(예술원), 현제명(예술원)

〈표 3〉 허정 과도정부·장면 정권기 주요 친일인사

분야	지위·직책	이름
행정 사법 입법	국무총리	장면
	장관	김선태(무임), 김영선(재무), 김우평(부흥), 이종찬(국방), 이태용(상공), 이해익(농림), 이호(내무), 전예용(부흥), 조재천(법무), 주요한(상공), 현석호(국방)
	차관·도지사	김홍식(충남), 이항녕(문교), 임춘성(전북), 최문경(경기), 황종률(충북)
	법원장·대법관	계창업(대법관), 고재호(대법관), 나항윤(서울지법원장), 노용호(대법관), 방준경(광주고등법원장), 변옥주(대법관), 사광욱(대법관), 손동욱(대법관), 유한열(춘천지법원장), 임석규(부산지법원장), 임한경(서울고법원장), 최윤모(대법관)
	국회의원	계광순(민주당), 김대식(무소속), 김석원(무소속), 김우평(민주당), 김용조(무소속), 김장섭(무소속), 문명호(민주당), 백낙준(무소속), 서범석(민주당), 성원경(자유당), 심중석(민주당), 엄민영(민주당), 유광렬(무소속), 유진령(민주당), 윤길중(사회대중당), 윤희남(민주당), 이범승(민주당), 이석기(민주당), 이재학(무소속), 이태용(민주당), 임문석(민주당), 장면(민주당), 조재천(민주당), 진형하(민주당), 최하영(무소속), 한중건(민주당), 현석호(민주당)
	기타	고재호(중앙선거관리위원장), 사광욱(중앙선거관리위원장), 전예용(한국은행 총재)
군 검찰	군	박원석(공사교장), 신상철(공군참모부장), 이한림(제1군사령관)
	검찰간부 (검사장 이상)	소진섭(대구지검 검사장), 이태희(검찰총장), 최대교(서울고검 검사장)
교육 언론 기타	대학총(학)장	김활란(이화), 유진호(고려), 이명직(서울신학), 조동식(동덕)
	학교이사장	김세원(국민대), 김원근(청주대), 김석원(원석학원), 이명세(성균관대), 이숙종(성신학원), 홍사훈(화성학원)
	대학교수	계철순(동아대), 고승제(서울대 등), 광종원(숙대), 김기창(홍대), 김동진(서라벌대), 김성태(서울대), 김영수(전북대), 김인승(이대), 김정록(서울대), 김준보(서울대), 김천애(서울대), 남홍우(고대), 노수현(서울대), 박승하(건대), 박영선(중대), 박재섭(고대), 방순원(서울대), 배철세(동아대), 백철(중앙대), 서은숙(이대), 서정주(동국대), 신석호(고려), 엄구현(동아), 윤강로(이화), 윤태림(서울), 윤희중(홍익), 이광래(서라벌), 이상범(홍익), 이인기(서울), 이항녕(고려), 이해구(서울), 이흥렬(서라벌), 장우성(서울), 정인섭(중앙), 조몽만(고려), 조재호(서울교대), 최재서(동국), 한노단(동아),

		한봉세(동아), 한웅길(동국), 흥헌표(성균관)
중·고교장		김석원(성남고), 박관수(대전고), 배상명(상명여고), 신봉조(이화여고), 조기홍(경기여중고), 조재호(서울사범), 황신덕(중앙여중고)
언론사 대표·간부		부완혁(조선일보 주필), 이근상(서울신문 상임감사), 이종극(동아일보 논설위원), 홍종인(조선일보 회장)
기타		이종욱(총무원장)

〈표 4〉 박정희 정권기 주요 친일인사

분야	지위·직책	이름
행정 사법 입법	대통령	박정희
	국무총리	정일권
	장관	고광민(교육), 고재필(제2무임), 김영선(국토통일원), 김용식(외무), 김원태(무임소), 김태동(체신), 김홍식(체신), 민복기(법무), 박일경(문교), 박임항(건설), 박춘식(교통), 백선엽(교통), 신상철(체신), 엄민영(내무), 유재홍(국방), 이집룡(교통), 이한림(건설), 이호(내무), 임충식(국방), 전예용(건설), 정래혁(국방), 흥헌표(체신), 황종률(재무)
	차관·도지사	김태동(교통), 신용균(국방), 윤태림(문교), 이흥배(경기), 최문경(외무)
	법원장·대법관	나항윤(대법관), 민복기(대법원장), 방순원(대법관), 방준경(대법관), 손동욱(대법관), 조진만(대법원장), 최윤모(대법관), 한봉세(대법관)
	국회의원	계광순(민주당), 고재필(공화당), 고종덕(통일주체), 권혁주(공화당), 김용국(통일주체), 김원태(공화당), 김장섭(공화당), 김경철(공화당), 노천명(공화당), 서범석(신민당), 송금선(통일주체), 신기석(공화당), 신상철(유정회), 유진오(신민당 총재), 윤길중(신민당), 윤치영(공화당), 이숙중(유정회), 이원영(공화당), 이종극(공화당), 이종찬(유정회), 이태용(민주당), 인태식(공화당), 임충식(공화당), 전예용(공화당의장서리), 정래혁(공화당), 정일권(공화당 의장), 정진동(공화당), 조재천(민주당 총재), 진형하(민정당), 황종률(공화당)

	기타	김선태(통일당 최고위원), 김윤근(중선선거관리위원장), 김활란(유네스코총회 수석대표), 윤치영(서울시장), 윤태일(서울시장), 이근생(감사원장 대리), 이주일(감사원장)
군 검찰	군	김동하(국가재건회의 최고위원), 김용국(해병대부사령관), 박원석(공군참모총장), 박준식(3군단장), 송석하(국방연구원장), 안광수(국가재건회의 최고위원), 윤준근(제1군사령관), 이주일(국가재건회의 최고위원), 임충식(합동참모회의 의장), 정래혁(2군사령관), 최주중(국가재건회의 최고위원)
	검찰 (검사장 이상)	정창운(검찰총장), 최대교(서울고검 검사장)
교육 언론 기타	대학총(학)장	고광만(부산), 고헌경(서울여), 곽종원(건국), 김준보(전남), 박일경(명지), 배상명(상명), 신기석(부산), 유진오(고려), 윤태림(숙명), 이숙중(성신), 이인기(영남), 이항녕(홍익), 조기홍(성신)
	학교이사장	고재호(숙명학원), 곽종원(건국대), 김길창(부산신학교), 김석(원석학원), 김영훈(영훈학원), 김원근(청주대), 박인덕(인덕학원), 박홍식(광신학원), 서은숙(이대), 송금선(덕성학원), 신봉조(이화학원), 윤태림(숙명), 이명세(성균관대), 이숙중(숙명학원), 임석진(동국대), 전필순(서울여대), 홍사훈(화성학원), 황신덕(추계학원)
	대학교수	고승제(한양), 김기창(수도여사대), 김동진(경희), 김동하(동국), 김두현(건국), 김성태(서울), 김영수(원광), 김인승(이화), 김정록(서울), 김준보(고려), 김천애(숙명), 남홍우(고려), 박관수(한양), 박승하(건국), 박영선(중앙), 박재섭(고려), 배철세(동아), 백철(중앙), 서기영(동국), 서은숙(이화), 서정주(동국), 신석호(고려), 엄구현(동아), 오승은(단국), 유치진(동국), 윤효중(홍익), 이인기(서울), 이인범(연세), 이종극(연세), 이항녕(홍익), 이혜구(서울), 이흥렬(숙명), 장우성(홍익), 정인섭(중앙), 정창운(동국), 조연현(동국), 조용만(고려), 최재서(한양), 한노단(부산), 한용길(영남)
	중·고교장	김기수(국악고), 김석원(성남고), 김영훈(영훈고), 신후식(계성고), 황운성(대전고)
	언론사 대표·간부	고광만(경향신문 회장), 고재필(민국일보 논설위원), 김세원(동양통신 이사), 김태동(내외경제 발행인), 박관수(전북매일신문 회장), 부안혁(조선일보 주필, 사상계 발행인), 유광렬(한국일보 논설위원), 이근생(서울신문 상임감사), 이기건(내외통신사장), 이종극(서울신문 주필), 이항녕(경향신문 논설위원), 이홍배(동양방송 사장), 최대교(경향신문 이사), 홍종인(조선일보 회장), 홍진기(중앙일보·동양방송 회장)
		곽종원(문예진흥원장), 김기수(국립국악원장), 김기창(미술협회 부이사장·예술원), 김길창(한국기독교연합회회장), 김동하(태고종

<p>기타 (문화·예술·종교)</p>	<p>종정, 김법룡(조계종 총무원장), 김은호(예술원), 김인승(예술원), 김중대(예수교총회장), 김학성(영화인협회 부회장), 남인수(한국연예협회부이사장), 노기남(대주교), 노수현(예술원), 박대륜(태고종 종정), 박시춘(한국연예협회 이사장), 박영선(예술원), 백철(예술원), 신용구(천도교령), 안익태('5·16혁명' 기념 국제음악제 주도), 이동락(천도교 총무원장), 이병일(예술원), 이서구(방송인협회 이사장), 이용설(YMCA이사장), 이우영(천도교령), 이원수(아동문학가협회장), 이종욱(총무원장), 이해구(예술원), 임석진(총무원장), 장우성(예술원), 전창근(시나리오작가협회장), 전필순(예수교장로회총회장), 정구충(대한의학협회장), 조연현(한국문인협회 이사장), 조택원(예술원)</p>
--------------------------	-----------------------------------------------------------------------------------------------------------------------------------------------------------------------------------------------------------------------------------------------------------------------------------------------------------------------------------------------------------------------------------------------------------

인물이 여러 정권에 걸쳐 있는 경우, 또 한 정권 내에서도 분야가 다른 경우는 중복을 허용했다.

위의 <표>들은 행정부는 도지사 및 차관 이상, 사법부는 각 법원장과 대법관, 입법부는 국회의원, 군은 수뇌부, 검찰은 검사장 이상, 경찰은 경찰서장 이상, 교육은 대학총장·이사장·대학교수·중고등학교장, 언론은 언론사 대표와 간부, 기타 문화·예술·종교 분야는 대표적인 단체장이나 예술원 회원을 등을 대상으로 했다. 즉 각 분야에서 한국 사회를 움직이는 지도층만을 대상으로 했다. 그 수를 헤아리면 410여 명이고, 중복까지 포함하면 840여 명이었다. 위의 표들만 보면 “대한민국은 친일파 세상”, “친일파 청산은 불가능한 일”이라는 등의 자조 섞인 이야기도 나올 만 했다. 이들 중에는 물론 지속적으로 반독재 투쟁에 나선 야권 인사들도 있었으며 이항녕의 경우처럼 과거 자신의 친일행위를 반성한 인물도 있었지만, 이는 극소수에 불과했다.

더욱이 『친일인명사전』은 일제강점기의 행적에 초점을 맞춘 것으로, 해방 이후의 내용은 일제강점기에 비해 상대적으로 소략한 편이다. 사전 수록자의 해방 이후의 행적을 더 조사하면 그 수는 훨씬 많아질 수 있다. 또한 재계 쪽은 업체의 규모나 위상을 파악하는데 어려움이 있어 포함하지 않았는데, 기업체나 경제단체의 핵심인물까지 포함한다면 대

상자는 더욱 늘어난다.

〈표 1〉의 미군정 시기를 통해서도 알 수 있듯이, 친일세력은 해방이 되었어도 여전히 권력의 중심에 있었다. 이들의 역할이나 영향력만을 놓고 본다면 오히려 그 권한은 일제강점기보다 더 강했다. 특히 경찰 분야에 친일세력의 진출이 두드러져 경찰간부의 대부분이 일제 때 경찰 출신으로 채워졌다.<sup>11)</sup> 미군정이 치안 유지와 좌익 척결을 위해 친일경찰들을 거의 그대로 등용했기 때문이었다. 경찰은 해방 공간의 혼탁한 정국에서 막강한 힘을 행사했는데, 경찰의 친일세력화는 각 분야의 친일세력이 부활하는 데 큰 힘이 되었다.

친일세력의 득세가 가장 두드러졌던 시기는 〈표 2〉, 〈표 4〉의 이승만·박정희 독재정권 시기였다. 친일세력은 독재정권 시기에 행정·사법부의 요직, 국회의원, 군 수뇌부와 검찰 간부 등 권력의 핵심을 차지했고, 독재가 장기화 되면서 전 분야를 장악해 나갔다. 특히 군 분야 친일세력의 진출이 두드러졌다. 이승만 정권의 군 수뇌부는 만주국군 장교와 일본군 장교 출신들이 장악했으며, 이후 만주국군 중위 출신인 박정희가 5·16군사쿠데타로 정권을 잡은 뒤에는 만주국군 출신들이 정권의 실세로 등장했다. 박정희 정권 때 국무총리였던 정일권, 장관이었던 박춘식·백선엽·이한림·임충식 등은 모두 만주국군 출신이었다. 또한 친일세력의 상당수는 여러 정권에 걸쳐 요직을 맡고 있었고, 일부는 5공화국까지 이어졌다. 정래혁(국무총리)·윤길중(국회부의장)·박일경(국보위 입법위원) 등은 5공화국하에서도 중책을 맡았으며, 고재필·유진오·정일권 등은 국정자문위원을 맡아 여전히 영향력을 행사했다.

한편 허정 과도정부와 장면 정권은 4·19혁명으로 독재정권이 붕괴

---

11) 1946년 10월까지 임명된 서울 시내 10개 경찰서장 중 1명은 일제시기 군수 출신이었고 9명은 경찰 출신이었다. 경기도 내 21개 경찰서장도 추천으로 된 8명을 제외한 13명이 모두 일제 경찰 출신이었다. 또 1946년 11월 현재 재직 중인 경위 이상의 경찰 1,157명 중 82%에 해당하는 949명이 일제 경찰 출신이었다(이강수 2003, 37).

된 뒤 수립되었다는 점에서, <표 3>과 같이 친일세력은 이승만 정권에 비해 상당히 줄어들었으며, 특히 이승만 정권의 하수인 역할을 했던 친일경찰들은 거의 일선에서 물러났다. 그러나 친일세력들은 여전히 건재했고 내각의 구성을 보더라도 그 영향력 또한 줄지 않았다. 장기간에 걸친 독재의 산물이었으며, 민주당 정권의 한계이기도 했다.

또한 교육 분야와 언론·문화·예술·종교 분야에도 친일세력이 광범하게 포진했다. 이들 중 상당수는 독재권력에 협력하며 각 분야의 권위자·원로로 자리 잡은 자들로서, 독재체제의 이념적·정신적 토대를 제공하며 독재권력이 장기간 유지하는 데 중심 역할을 했다. 이들은 일제강점기에 그러했던 것처럼, 해방 이후에도 권력 지향적·체제 지향적이었으며, 반공주의와 국가주의를 신봉했다. 이러한 지향성은 그들이 살아남는 방법이었지만, 그 과정에서 민주주의는 구호에 불과했다.

#### 4. 민주화운동과 친일청산 문제

해방 후 친일세력은 장기간에 걸쳐 독재체제가 지속되는 동안 권력의 중심에 있었고, 각 분야에서 세력과 영향력을 끊임없이 확대·재생산했다. 또한 친일세력 중심의 지배구조로 바뀌면서 독재체제는 더욱 강화되었다. 독재체제는 친일세력의 강력한 보호막이었고, 친일세력은 독재체제를 강건하게 유지하는 토대였다. 이러한 상관관계는 친일세력이 국가주의와 반공주의를 기반으로 존립했다는 점에서 충분히 예상되는 일이었다.

친일 논리에는 이미 국가주의와 반공주의가 내포되어 있었고, 특히 중일전쟁 이후 친일세력들이 독립의 희망을 잃고 수용한 내선일체의 논리는 파시즘 국가주의 논리로서 맹목적인 국가주의·반공주의·전체주의

를 강화하는 논리였다.<sup>12)</sup> 여기에 미군정기를 거치면서 단독정부 수립과 반공만이 자신들이 살아남을 수 있는 유일한 대안이라는 점을 확신하면서 국가주의와 반공주의를 더욱 맹신하게 되었다. 이들에게 있어 국가주의와 반공주의는 생존의 논리였고 무기였다. 이승만·박정희정권 시기에 독재체제가 강화되고 장기화된 데에는 친일세력의 영향력이 컸다. 특히 박정희정권 시기에 일제 말기의 반인륜·반인권적인 전시 파시즘체제와 유사한 파시즘적 유신체제가 나타났던 것도 이와 무관하지 않다.

이러한 점에서 친일청산 문제는 민주화를 위해서도 중요한 문제였다. 그러나 한국 민주화운동 과정에서 친일청산 문제는 이슈가 되지 못했다. 독재체제의 주요 기반이 친일세력이었다는 점에서 친일청산은 반독재·민주화의 가치를 내포하고 있었지만, 한국 민주화운동의 역사에서 친일청산 문제가 차지하는 비중은 크지 않았다.

한국 민주화운동 과정에서 친일청산 문제가 현안으로 제기되지 못한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반민특위가 와해된 이후 친일문제가 장기간 금기시되면서, 실존적 기억 대신 국가 주도의 왜곡된 집단적 기억이 자리 잡았기 때문이었다. 이것을 가능케 한 것은 반공주의였다. 반공이데올로기가 최고 통치이념이 되어 반공은 애국애족이고 민족주의라는 관념이 확산됨으로써, 친일은 반공에 묻혀 버리게 되었고 친일세력들은 반공애국투사나 민족주의자로 기억되기 시작했다. 그 결정적인 계기는 한국전쟁이었다. 투철한 반공주의자임을 표방한 친일세력이 한국전쟁 이후 애국자 또는 민족주의자로 탈바꿈한 것이다. 해방 직후와 같이 친일문제로 이들을 비판하는 것은 이제 국론을 분열시키고 애국자를 폄하하는 반국가적 행위로 취급될 뿐이었다.

만주국군 출신 박정희의 집권과 장기간에 걸친 독재는 친일의 실존적 기억을 더욱 멀어지게 했고, 반면 친일세력은 더욱 안정적인 지배체

---

12) 이에 대해서는 이지원의 연구(2007) 참조.



제를 구축할 수 있었다. 특히 유신체제는 일제 말기의 강력한 파시즘의 지배원리에 ‘근대화론’을 접목시킨 ‘일제 파시즘의 한국적 변형’이라 할 만했고, 그 자체가 친일세력을 정당화하고 옹호하는 체제였다. 또한 박정희 정권이 오랜 독재기간 동안 반공과 더불어 경제개발을 최고 통치 목표로 삼아 경제개발에 주력하고 교육과 사상통제를 강화함으로써, 반공과 경제개발만이 살 길이라는 인식이 크게 확산되었다. 이제 친일세력은 ‘반공애국투사’에 ‘근대화의 주역’까지 덧붙여지면서 존립 기반은 더욱 견고해졌다. 여기에 친일문제는 학술적 접근조차도 거의 불가능한 상황으로서<sup>13)</sup> 친일파는 이완용을 비롯한 극소수의 매국노에만 해당될 뿐이었다. 결국 오랜 독재 기간 동안 친일의 실존적 기억이나 연구는 철저히 차단된 채 왜곡된 기억만이 자리 잡으면서, 친일문제는 더 이상 실천적·현실적 문제가 아닌 알 수 없는 과거의 일이 되어버렸다.

여기에 한국 민주화운동의 특성 또한 한 원인으로 지적할 수 있다. 한국 민주화운동은 혁명적인 사회변화를 추진한 것이 아니라 기본적으로 권위주의 정권에 대한 반독재 항거였기 때문에, 이념적 정체성 등 급진적인 문제를 쟁점화하는 데 소극적이고 회피적이었다.<sup>14)</sup> 또한 인적 청산과 쇄신에는 극히 제한적이었다. 이러한 특성 때문에 지배 구조를 뿌리째 흔들 수 있는 급진적인 친일청산 문제를 쟁점화하기는 어려웠을 것이다. 더욱이 민주화운동 당시의 한국 사회는 분단과 전쟁, 장기간의 독재

13) 1980년대 이전 독재정권하에서 친일문제에 관한 연구는 1966년 임종국의 『친일문학론』이 거의 유일했다. 문인과 문학작품만을 대상으로 했지만, 당시로서는 파격적인 내용으로 오랫동안 금서로 묶여 있었다.

14) 여기에는 민주화운동 과정에서 보여준 민중의 태도와도 관련이 있었다. 안병욱은 한국의 민주화운동은 민중의 자발성에 의지해 전개되었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민중은 첨예한 저항 의지와 희생을 무릅쓴 폭넓은 참여에도 불구하고 반공의식, 국가보안법, 대미관계, 계급갈등 등 일련의 이념적 정체성에 관련되는 문제를 쟁점화하는 데 소극적이고 회피적이었다. 또 민중의 이런 태도 때문에 진보운동권의 집요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항쟁을 이끌 지도부, 전략, 조직 건설도 성사되지 못했다. 이는 분단과 한국전쟁의 경험에서 비롯된 이념에 대한 강한 부정적 인식이 크게 작용했기 때문이다”라고 주장하였다(안병욱 2010, 35).

를 거치면서 냉전체제에 길들여진 상황이었다. 근본적이거나 본질적인 문제보다는 현상적인 문제에 치중할 수밖에 없는 한국 민주화운동의 특성상, 친일청산 문제를 주요 현안으로 내걸기란 어려운 문제였다.

또한 친일문제와 관련해서는 민주화운동 세력 내부의 한계도 컸다. 가장 큰 한계는 반독재 투쟁에 참여했던 야당이 친일문제에 자유롭지 못하다는 점이었다. 한국 야당의 큰 흐름은 한국민주당-민주당-신민당으로 이어지는 거대 보수야당의 계보였다. 알려진 바와 같이 한국민주당은 해방 직후 친일세력 중심으로 결성된 정당이었고, 자유당 정권에 대항해 만든 민주당 역시 주요 인적 기반은 친일세력이었다. 당연히 반독재 투쟁 과정에서 친일문제는 전혀 고려 대상이 아니었고, 4·19혁명 직후의 개혁 과정에서도 친일청산 문제는 논의 대상이 아니었다. 4·19혁명 이후 추진된 사회 개혁에는 과거청산 문제도 포함되었지만, 국회나 정부 차원에서는 논의 또는 추진된 과거청산 문제는 ‘민간인학살’, ‘제주4·3사건’, ‘김구암 살사건’ 등에 한정되었을 뿐이었다(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2008, 270-283).

앞의 <표 3>에 나타난 바와 같이 정권의 수장인 장면을 비롯해 친일 경력의 인물이 요직을 차지하거나 각 분야에 친일세력이 여전히 건재한 상황에서, 민주당 정권이 친일청산 문제를 다룬다는 것 자체가 사실상 불가능한 일이었다. 민주당이 분열하면서 구파가 신파와 차별화하고 분당의 명분으로 친일문제를 들고 나오기는 했으나,<sup>15)</sup> 당리당략 차원에서 제기된 문제일 뿐 민주당 내의 인적 쇄신이나 노선에 전혀 영향을 미치지

---

15) 민주당 구파는 5대 민의원 선거 전략의 하나로 민주당 신파가 친일을 했다는 사실을 널리 알리는 것이었다(동아일보 1960/07/03). 선거 직후 민주당 구파 간부 조영규는 “신파는 강경하지만 구파는 온건하고 관용성이 있으며 친일 여부에 있어서도 구별이 되므로 분당의 소지가 충분하다”며 분당을 암시했다(동아일보 1960/08/03). 여기에 자유법조단의 운영위원 신태악·한격만·김춘봉·최대용 등은 5대 민의원에서 제1야당을 지향하여 보수신당으로 발족할 것을 결의하고, 제1당이 되지 못하는 경우에는 민주당 구파와 연립내각을 구성하겠다고 말하면서 신파와 제휴하지 않는 이유를 “신파 사람들은 원래 민주당원이 아니라 흥사단과 국내 친일분자들이 합친 세력이기 때문이다”라고 지적했다(동아일보 1960/07/23).

못했고 오히려 여론의 역풍을 맞기도 했다.<sup>16)</sup> 당시 민주당은 신파든 구파든 친일문제에서 자유롭지 못했으며, 특히 장면내각은 친일내각이라는 평이 크게 나돌 정도였다(동아일보 1960/09/09). 심지어 일본정부에서조차 장면내각을 친일내각으로 규정했다는 보도까지 나왔다(경향신문 1960/12/21, 동아일보 1960/12/23). 민주당은 근본적으로 친일청산을 수행할 만한 정당이 아니었고, 그 계보를 잇는 신민당 역시 민주당의 한계를 벗어나기에는 역부족이었다. 야당이 민주화운동 과정에서 친일청산 문제를 회피하거나 소극적일 수밖에 없는 이유였다.

물론 야당이 한국 민주화운동의 중심세력은 아니었다. 4·19혁명, 1970년대 반유신투쟁, 1980년대 광주항쟁과 6월항쟁 등의 민주화운동에서 중심역할을 한 것은 제도권 밖이었다. 또한 4·19혁명과 같이 독재정권을 붕괴시킨 것도 정당정치에 따른 선거 결과도 아니었다. 한국 민주화운동은 학생과 지식인, 재야세력을 중심으로 전개되었고, 여기에 정치권의 야당이 동참하는 형태로 이루어진 것이다(정해구 2010, 36). 그러나 야당이 제도권 내에서 반독재 투쟁의 한 축을 담당할 민주화운동 세력으로서 일정한 역할을 수행했고, 또한 대중들에게 미친 영향력은 오히려 제도권 밖보다 컸다. 이러한 점에서 야당은 민주화운동 과정에서 무시할 수 없는 존재였고, 야당이 안고 있었던 친일문제에 관한 결함은 결국 민주화운동 세력 전체가 친일문제에 자유롭지 못한 결과를 초래했다.

이러한 제약과 한계로 친일청산 문제는 이승만 독재에 대한 항거에서부터 6월항쟁에 이르는 장기간에 걸친 민주화운동 과정에서 이슈가 되지 못했다. 그나마 4·19혁명은 여러 가지 제약이 있었지만, 학생들이 혁명의 주체라는 점에서 최소한의 가능성은 열려 있었다. 학생들이 4·19혁

---

16) 당시 언론에는 대개 부정적인 내용이 실렸다. 한 예로 『경향신문』에는 “민주당이 한민당 때의 죄악 때문에 아직까지 욕을 먹고 있는데, 한민당을 무슨 자랑처럼 여기기는 구파야말로 4·19 전까지도 자유당과 흐릿한 관계를 맺고 있었던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라는 태운기(변호사)의 인터뷰 내용이 실렸다(경향신문 1960/07/23).

명의 주체로 나서게 된 데에는 교육과 언론을 통해 누구보다도 먼저 민주주의를 새롭게 접할 수 있었고, 자신들을 기성세대와는 다른 세대로 인식했기 때문이다. 즉 학생들은 기성세대가 친일과 좌우 갈등 그리고 부정부패 등 역사의 부정적 유산에 의해 오염되었으며, 따라서 그러한 오염으로부터 자유로운 그들만이 타락된 역사를 구할 수 있다는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다(정해구 2010, 27). 혁명 과정에서 학생들은 독재정권 타도뿐 아니라, 독재정권을 방지한 채 현실에 안주하고 있는 오염된 기성세대들을 강하게 비판하며 민주주의를 요구했다.<sup>17)</sup> 이들의 요구는 기성세대와 차별되는 근본적인 개혁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구체적인 언급은 없었지만 친일청산 문제까지도 전망하는 것이었다.

실제로 혁명 직후 각 신문에는 학생들의 의혈투쟁의 의미를 강조하며 친일세력 척결을 주장하는 글들이 자주 지면을 장식했다. 예컨대 『경향신문』 5월 10자에는 3·15부정선거는 친일파들이 일제 때 습득한 독재관료의 습성을 이승만 정권 12년 동안에 그대로 행사했기 때문에 일어난 것이라며, 최소한 각 도·시·군·교육구·경찰서·읍면·지서의 책임자는 모두 처벌해야 한다는 내용이 실렸다(경향신문 1960/05/15). 또 5대 민의원 선거에서 절대 뽑지 말아야 할 인물 유형을 제시하면서 그 첫 번째로 ‘친일분자로서 그 후 자유당에 편승하여 스스로의 영달만을 목적으로 한 자’를 뽑았다(경향신문 1960/07/28). 선거 직후에도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장면내각의 친일성을 비판하는 내용이 계속 실렸다. 그러나 이러한 주장은 정권을 잡은 민주당 정권의 한계와 이어 발생한 5·16군사쿠데타로 좌절되었다.

한국 민주주의 발전에 있어 사회 변혁을 동반한 인적·제도적 친일

---

17) 4·19혁명 당시 학생들이 주장했던 구호에는 민주주의를 강조하면서 “선배들은 썩었다”, “기성세대는 각성하라” 등의 기성세대를 비판하는 구호가 자주 등장했다. 학생들의 구호에 대해서는 김은경의 연구(2010, 83-85)를 참조할 것.

청산은 민주주의를 크게 신장시킬 수 있는 길이라는 점에서 중요한 사안이었지만, 지금까지의 한국 민주화운동 과정에서는 주목받지 못했다. 결국 반민특위가 좌절된 이후 한국 사회에서 친일청산과 민주화를 동시에 추진하면서 민주주의를 진전시키기는 일은 어려운 상황이 되어버렸다.

## 5. 민주화(6월항쟁) 이후 친일청산운동의 성과와 과제

오랜 잠복기를 거쳐 친일청산 문제가 다시 대두한 것은 1987년 6월 항쟁 이후 제도적 민주화가 이루어진 뒤였다. 이른바 ‘제2의 친일청산운동’<sup>18)</sup>은 민주화운동의 산물로서 사회운동 과정에서 전개되었다.<sup>19)</sup> 운동의 방향도 이미 오랜 세월이 지났기 때문에 인적·제도적 청산보다는 진상규명을 통한 역사적 청산에 초점을 맞출 수밖에 없었다. 따라서 그 특징은 처벌이나 보상을 가장 중시하는 ‘정의 모델’보다는 진상규명을 중시하는 ‘진실·화해 모델’에 더 가까웠다(김동춘 2005, 19).

그러나 그 중요성과 파괴력은 여전히 컸다. 보수 세력이 해방 직후와 거의 같은 논리로 친일청산운동을 반대하고 있는 것이 그 단적인 예다. 보수 세력의 논리는 해방 직후 친일파들의 반대논리와 거의 다른 것이 없었다. 색깔론<sup>20)</sup>·인재론·전민족 공범론<sup>21)</sup> 등 친일청산 반대론은 해

18) 해방 직후의 친일청산운동과 구분하기 위해 편익상 ‘제2의 친일청산운동’으로 지칭하기로 한다.

19) 일반적으로 과거청산은 전쟁 직후, 혁명 직후, 정권교체 이후, 사회운동의 과정에서 제기되었다. 우리나라는 크게 세 번의 큰 물줄기가 있었다. 첫 번째는 해방 직후, 두 번째가 4·19혁명 이후였고, 세 번째는 민주화의 시기인 1987년 이후, 보다 구체적인 법적 조치로 보면 1998년 이후였다(정근식 등 2003, 15-16).

20) “친일인명사전편찬위원회와 민족문제연구소가 ‘친일인명사전’에 수록될 4,776명의 명단(1차명단: 필자 주)을 발표하자 그 후손과 기념사업회 등이 ‘명예훼손’에 강한 분노를 나타내

방 직후 친일파들이 여론을 확산시켜 결국 반민특위를 좌절시킨 강력한 무기였는데, 60여 년이 시점에서 보수 세력들은 여전히 같은 논리였다. 특히 색깔론은 냉전시대의 산물이었지만 보수 세력에게는 민주화 이후에도 여전히 강력한 무기이자 보호막이었다. 보수 세력의 반대는 친일청산 문제가 단순히 과거사가 아닌 현실과 직결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제2의 친일청산운동’은 민주화의 영향으로 그동안 금기시되었던 친일문제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가운데 1991년 실천적 연구를 표방한 민족문제연구소가 설립되면서 본격적으로 전개되었다. 이후 민족문제연구소를 중심으로 시민운동 차원의 친일청산운동이 시작되었으며, 이와 함께 학계의 관심도 높아지면서 친일문제에 관한 연구들이 나오기 시작했다. 이를 바탕으로 2000년대에는 본격적인 실천운동이 전개되었다. 김할란상·미당문학상·박정희기념관 반대 등 친일인물에 대한 기념사업 반대, 국회의 친일파 명단 발표, 친일문제 연구의 활성화, 각종 강연회·전시회 등 다양한 친일청산운동이 전개되었다(민족문제연구소 2011, 59-96). ‘제2의 친일청산운동’은 대중들의 친일문제에 대한 인식을 크게 확산시켰을 뿐 아니라 다양한 성과들을 도출해 냈다.

---

고 있다. 당사자들은 세상을 떠난 지 오래다. 후손이 선조를 아무리 변호해도 ‘낙인(烙印)’의 피해를 이미 본 뒤다. …… 이 단체들은 과거사 정리라는 명분을 내세우며 좌(左)편향적 역사관으로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훼손하고 있다는 의심을 받아왔다. 이번 발표는 자의적으로 과거를 향해 칼을 휘두르는 횡포나 다름없다. 일제하 인물들에 대해서는 식민통치라는 강압적 체제 속에서 어디까지를 친일행위로 봐야 하는지 사회적 공감대가 이뤄진 뒤 평가하는 게 순리다”(동아일보 2008/05/01).

- 21) “일제가 조선을 강점(強占)한 1910년부터 1945년까지 36년 세월을 이 땅에서 살아온 조선인(朝鮮人) 대부분의 삶은 친일(親日)과 반일(反日)의 이분법(二分法)으로 나누기에는 너무나 복잡다단하다. 일제시대에 청장년 시절을 보낸 사람들은 흥난파가 작곡한 수백 편의 한국가곡(歌曲) ‘성불사’ ‘봉선화’ 등을 통해 나라 잃은 백성의 슬픔과 비애를 뼈저리게 느끼며 나라를 되찾아야겠다는 마음을 새롭게 했던 세대다. 물론 그는 일본의 강압 통치가 최악으로 치달을 때 일제의 강요에 의해 몇 편의 군가(軍歌)를 작곡했다. 독립된 나라 대한민국에서 마음 편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는 우리가 잘난 듯이 뽐내며 흥난파에게 친일파라는 딱지를 붙여도 되는 것일까”(조선일보 2008/05/01).

이 중에서도 가장 큰 성과는 『친일인명사전』의 편찬과 반민위위원회·재산조사위원회의 활동이었다. 『친일인명사전』의 편찬 주체는 민간단체이고 두 위원회는 정부기관이라는 성격상 차이는 있었지만, 모두 민주화의 산물로서 객관적·실증적 측면에 중점을 두어 친일청산 문제를 일단락 지었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었다.

『친일인명사전』은 민족문제연구소의 주관하에 1999년 대학교수 1만여 명의 편찬지시 성명을 바탕으로 2001년 말 학계를 망라한 친일인명사전위원회가 발족하면서 본격적인 편찬에 착수했고, 8년여의 작업 끝에 2009년 말 발간되었다. 역사학계를 중심으로 각 분야의 전문연구자 150여 명의 편찬위원과 180여 명의 집필위원이 참여했으며, 사전에 수록되는 4,389명이었다. “반민족행위자 전부와 부일협력자 상층부”를 대상으로 했으며, 특히 일정한 직위 이상이나 일제에 협력한 지식인 등 부일협력자 상층부를 대상으로 한 것은 지위에 대한 책임과 사회적 책임을 엄중히 묻는다는 취지였다(민족문제연구소 2009 1권, 21-22). 즉 일제강점기의 실정과 부합하게 선정기준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문제의식 아래 식민통치체제에 복무한 지위에 따른 책임과 지식인의 도덕적 책무를 강조하는 방향으로 기준을 강화했으며, 단죄의 측면보다는 역사적·도의적 평가에 중점을 두었다(조세열 2010, 279). 이 때문에 반민위원회의 대상자보다는 훨씬 많은 수가 포함되었다. 또한 해방된 지 수십 년이 지난 시점에서 친일행위를 파악하고 재단하는 것은 대단히 어렵고 논란의 소지가 많기 때문에, 객관적이고 신빙성 있는 자료를 근거로 한 철저한 증거주의를 원칙으로 했다. 많은 논란과 보수 세력들의 집요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민간차원에서 국민모금 등 유례없는 국민적 관심과 지원을 받으며 총 3,000여 쪽에 달하는 방대한 분량의 친일인명사전이 출간한 것은 친일청산운동의 큰 성과라고 할 수 있었다.

반민위원회는 “일본제국주의를 위하여 행한 친일반민족행위의 진상 규명과 이를 통한 역사의 진실과 민족의 정통성 확인 나아가 사회정의

구현”을 목적으로 「일제강점하반민족행위진상규명에관한특별법」(이하 반민규명법)에 의거해 2005년 5월부터 2009년 11월까지 4년 6개월 동안 친일반민족행위 진상규명 활동을 벌였다(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 2009 I, 213). 반민특위가 와해된 지 60여 년 만에 정부가 직접 친일청산에 나섰다는 점에서 획기적이고 역사적인 일이었다. 반민특위와 다른 점은 반민족행위에 대한 처벌에 있는 것이 아니라 역사적 진실 규명을 통한 역사적 청산에 있다는 점이였다. 그러나 국가가 반민족행위자를 선정하고 이를 관보 등 공문서에 게재하는 행정절차가 수반된다는 점에서 일종의 명예형(名譽刑)이라 할 수 있었다(조세열 2010, 277).

친일반민족행위의 범주는 “러일전쟁으로 국권이 침탈된 시기에서부터 광복 때까지의 정치·경제·사회·문화 전 분야에 걸친 친일반민족행위”로 크게 “매국행위, 항일운동이나 독립운동에 대한 탄압행위, 일제의 통치기구에 참여하여 적극 협력한 행위, 경제나 문화침탈에 적극 협력한 행위, 일제의 대륙침략전쟁에 적극 협력한 행위 등 네 가지 유형”으로 구분했다(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 2009 II, 31). 범주는 친일인명사전의 선정기준과 크게 다르지 않지만, 친일인명사전이 지위와 행위를 모두 대상으로 한 반면에 반민위원회는 행위에 중심을 두어 구체적 행적을 입증하지 못하면 상당한 지위에 있었다 하더라도 친일반민족행위자에서 제외했다는 점이 근본적인 차이였다.<sup>22)</sup> 이에 따라 친일인명사전에 비해 그 대상자가 축소될 수밖에 없었으며, 최종적으로 친일인명사전의 수록자의 1/4수준인 1,006명을 친일반민족행위자로 결정했다.

이어 2005년 12월 제정된 「친일반민족행위자재산의국가귀속에관한특별법」에 의거해 2006년 7월 재산조사위원회가 출범했다. 위원회의 목

---

22) 반민규명법은 폐기와 재상정을 거듭하면서 정치적 논란을 거친 뒤 원안과는 판이한 내용으로 입안되었는데,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 초안의 지위범이나 당연범 규정을 삭제하고 해당 범조 전부를 친일반민족행위로 재구성했다(조세열 2010, 278).



적은 “일본제국주의의 식민통치에 협력하고 우리 민족을 탄압한 반민족 행위자가 그 당시 친일반민족행위로 축재한 재산을 국가에 귀속(친일반민족행위자재산조사위원회 2010 I, 38)”시키기 위한 반민족행위자에 대한 조사활동이었다. 반민위원회의 후속 조치로서 정부 차원의 친일청산을 마무리하는 입장에서 설치된 기구였지만, 재산 환수를 목적으로 한다는 점에서 반민위원회의 활동보다 훨씬 규정성이 강했다. 이러한 작업은 법적으로는 물론 역사적으로도 그 유례가 없는 과거사 청산의 새로운 모델이라 할 수 있었다. 이 때문에 소급입법·평등권 침해·연좌제·과잉금지 원칙 위배 등 위헌 논란의 소지가 있었고, 이를 최소화하기 위해 조사대상 친일반민족행위자를 특정하고, 선의의 제3자를 보호하는 것은 물론 이의신청·행정심판·행정소송 등의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기도 했다. 논란이 많았던 만큼 그 대상자도 극히 제한적일 수밖에 없었다. 결과적으로 4년여의 활동 끝에 친일반민족행위자 168명으로부터 친일행위의 대가성이 인정된다고 판단되는 친일재산 2,359필지(시가 2,106억 원 공시지가 959억 원 상당)에 대하여 국가귀속결정을 내렸다(친일반민족행위자재산조사위원회 2010 I, 5).

이와 같이 민간과 정부 차원에서 동시다발적인 친일청산을 위한 노력과 성과는 불가능할 것만 같았던 친일청산의 역사적 과제 수행의 단초를 열었다는 점에서 높이 평가할 만한 일이었다. 문제는 과연 이러한 성과들이 우리 사회를 변화시키고 민주주의를 공고히 하는 계기가 될 수 있느냐에 있다. 민주화 이후 과거청산을 통해 기대하는 것은 민주주의를 더욱 공고히 하고 사회정의를 바로 세우는 데 있는 것인데(김동춘 2005, 31), 과연 ‘제2의 친일청산운동’이 그러한 방향으로 작동하고 있느냐가 문제다. 최근의 성과가 완결적 의미를 갖는 것은 아니라 하더라도, 현 상황은 그렇지 못하다. 여전히 보수 언론을 중심으로 한 보수 세력의 반발은 줄지 않았고, 그 영향으로 친일청산의 필요성에 의문을 갖는 일반인들도 적지 않다.

이러한 현상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지만, 민주화 이후에도 민주주의 토대가 여전히 취약하다는 점이 중요한 요인이다. 과거청산의 성공 여부는 그 사회의 민주주의 정도를 가늠하는 척도인데, 우리 사회의 민주주의는 과거청산이 충분히 이루어질 정도의 수준까지 오르지 못하고 있다. 여기에는 현 정권의 의지가 크게 작용한 탓도 있지만, 무엇보다 한국 민주주의의 구조적인 문제가 원인이다. 민주화 이후 한국 사회는 시민사회의 팽창으로 여러 방면에서 민주적 가치가 크게 확산되었지만, 그에 따라 구체제의 헤게모니 세력 또한 약화되기는커녕 오히려 보수적인 언론매체를 통해 더욱 강화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이는 시민사회가 기독교세력의 이데올로기적 헤게모니를 대체할 수 있는 민주주의의 가치를 발전시키지 못했기 때문이다(최장집 2002, 222-223).

한편으로는 ‘제2의 친일청산운동’의 특성 때문이기도 했다. 즉 민주화 이후의 친일청산운동은 청산방법과 양상은 다르지만 그 의미와 가치면에서는 해방 직후의 친일청산운동의 연장선상이었다. 따라서 실패한 반민특위의 가치와 정신을 되살려 미해결된 민족적 과제를 수행하고 민족정기를 바로 세운다는 취지가 강했다. 그 자체로 큰 의미가 있는 일이었지만, ‘밀린 과제’ 해결에 집중한 나머지 새로운 과제, 즉 한국 민주주의 발전이라는 측면에서 반민특위 와해 이후 친일세력과 독재정권의 관련성을 규명하는 일에는 소홀했다. 이 때문에 복고적·과거지향적이라는 비판이 제기되기도 했다. 물론 오랜 공백기로 다시 시작해야 하는 입장에서 해방 이후의 문제는 부차적일 수밖에 없었지만, 이에 대한 노력이 부족했던 것도 사실이다. 더욱이 친일세력은 해방 이후 끊임없이 진화하고 확대·재생산되고 있었다. 지금까지는 주로 특정인물의 기념사업 반대에만 치중했을 뿐이었다.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친일세력은 일제강점기와 해방 이후에 걸쳐 파시즘·독재체제를 통해 득세하고, 특히 이승만·박정희 정권 시기에는 독재체제를 유지·강화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했다. 친일청산은 민

주적·평화적 가치를 강하게 내포하고 있었다. 따라서 민주주의를 공고히 하는 방향으로 친일청산운동의 외연을 넓히는 일, 즉 민주적·평화적 가치를 확산시키고 사회화하는 일은 한국 민주주의 발전을 위해 중요하며, 앞으로의 친일청산운동이 나아갈 방향이기도 하다. 이를 위해서는 최근의 성과를 통해 보수 세력의 이데올로기를 대체할 수 있는 다양하고 구체적인 민주적·평화적 가치를 창출하는 일 또한 중요하다.

## 6. 맺음말

친일세력들은 대부분 일제 말기 파시즘체제에 순응해 일제의 침략 전쟁에 협조하고 대중들의 전쟁협력을 이끌어내는 데 주도적인 역할을 했다. 이들은 반민특위가 와해된 이후 각 분야를 장악하고 독재정권을 유지·강화하는 데 핵심적 역할을 했다. 해방 이후 독재정권의 이념적 바탕은 반공주의·국가제일주의·전체주의로서, 이는 친일세력이 일제 말기 수용한 내선일체의 논리와 같았다. 특히 이들은 장기간의 독재 기간 동안 친일의 실존적 기억을 없애는 대신 ‘반공애국투사’, ‘근대화의 주역’으로 탈바꿈하며 세력을 확장했으며, 강력한 유신독재를 통해 더욱 안정적 지배체제를 구축했다. 『친일인명사전』에 수록된 친일세력의 해방 이후 행적을 살펴보면, 장기간에 걸친 독재 기간 동안 전 분야에 걸쳐 득세하고 있었으며, 권력의 핵심을 이루고 있었다.

이러한 점에서 친일청산은 반독재·민주화의 가치를 지니고 있었지만, 한국 민주화운동의 역사에서 친일청산 문제가 차지하는 비중은 극히 작았다. 친일문제가 오랜 기간 동안 금기 영역으로 묶이면서 현실과 동떨어지게 되었고, 실존적 기억 대신 국가 주도의 왜곡된 집단적 기억이 자리 잡았기 때문이었다. 또한 근본적이거나 본질적인 문제보다는 현상

적인 문제에 치중할 수밖에 없는 한국 민주화운동의 특성, 민주화운동 세력의 한 축을 담당할 야당의 한계도 간과할 수 없는 요인이었다. 한국 민주화운동사에서 야당이 중심세력은 아닐지라도 한 축을 담당하고 있는 이상, 야당이 친일문제에서 자유롭지 못한 점은 결국 민주화운동 세력 전체가 친일문제에 자유롭지 못한 결과를 초래했다.

결국 반민특위가 좌절된 이후 한국 사회에서 친일청산과 민주화를 동시에 추진하면서 민주주의를 진전시키기는 일은 어려운 상황이 되어버렸다. 다시 친일청산 문제가 대두한 것은 1987년 6월항쟁 이후 제도적 민주화가 이루어진 뒤였다. 이른바 ‘제2의 친일청산운동’은 민주화운동의 산물로서 사회운동 과정에서 전개되었다. 운동의 방향도 이미 오랜 세월이 지났기 때문에 인적·제도적 청산보다는 진상규명을 통한 역사적 청산에 초점을 맞출 수밖에 없었다. ‘제2의 친일청산운동’은 시민사회를 중심으로 다양한 방법으로 전개되었으며, 그 성과도 컸다. 가장 큰 성과는 『친일인명사전』의 편찬과 반민위원회와 재산조사위원회의 활동이었다. 성격상의 차이는 있었지만 민간과 국가기구가 동시에 불가능할 것만 같았던 친일청산의 역사적 과제 수행의 단초를 열었다는 점에서 높이 평가할 만한 일이었다.

그러나 이러한 성과들이 민주주의 발전의 계기로 작동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여기에는 시민사회나 운동의 주체들이 기득세력의 이데올로기적 헤게모니를 대체할 수 있는 민주주의 가치를 발전시키지 못한 것이 큰 요인이었다. 한편으로는 ‘제2의 친일청산운동’이 그 의미와 가치면에서 해방 직후의 친일청산운동의 연장선상에서 추진됨으로써, 한국 민주주의 발전이라는 측면에서 반민특위 와해 이후 친일세력과 독재정권의 관계를 밝히는 일에 대해서는 소홀했던 것도 한 원인이었다. 따라서 민주주의를 공고히 하기 위해서는 친일청산운동의 외연을 넓히는 일, 즉 민주적·평화적 가치를 확산시키고 사회화하는 일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

## 참고문헌

- 김동춘. 2005. “한국 과거청산의 성격과 방향.” 『민주사회와 정책연구』 8.
- 김민철. 2006. 『기억을 둘러싼 투쟁』. 아세아문화사.
- 김영수. 2008. 『과거사 청산, 민주화를 넘어 사회화로』. 메이데이.
- 김은경. 2010. “한국 민주화운동의 기원으로서 4월혁명 재평가.” 한국정치연구회 편. 『다시 보는 한국민주화운동』. 선인.
- 민족문제연구소. 2009. 『금단의 역사를 쓰다, 18년간의 대장정』. 민족문제연구소.
- \_\_\_\_\_. 2011. 『민족문제연구소 창립20주년 자료집』. 민족문제연구소.
- 민족문제연구소·친일인명사전편찬위원회. 2009. 『친일인명사전』 1권·2권·3권. 민연.
-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2008. 『한국민주화운동사』 1. 돌베개.
- \_\_\_\_\_. 2009. 『한국민주화운동사』 2. 돌베개.
- 박수현. 2006. “전시파시즘기(1937-45) 조선 지식인의 체제협력 양상과 논리.” 『한국민족운동사연구』 46.
- 박수현·이용창·허 중. 2009. 『일제의 친일파 육성과 반민족세력』. 독립기념관 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
- 서중석. 2000. “친일파의 존재양태와 그 성격.” 『한국근현대사와 친일파 문제』. 아세아문화사.
- \_\_\_\_\_. 2003. “한국사화의 과거청산.” 『기억과 전망』 가을호.
- 안병욱. 2010. “한국 민주화운동에 대한 평가와 인식의 전환을 위하여.” 『한국 민주화운동의 성격과 논리』. 선인.
- 이강수. 2003. 『반민특위 연구』. 나남출판.
- 이광수(김원모·이경훈 편역). 1997. 『동포에 고향』. 철학과 현실사.
- 이준식. 2005. “파시즘기 국제정세의 변화와 전쟁 인식.” 『일제하 지식인의 파시즘체제 인식과 대응』. 해안.
- 이지원. 2007. “「삼천리」를 통해 본 친일의 논리와 정서.” 『언론매체를 통해 본 친일의 논리』.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 2007년 학술대회 자

료집.

- 임현영. 2000. “친일파의 정의와 범주.” 『한국근현대사와 친일파 문제』. 아세아문화사.
- \_\_\_\_\_. 2004. “왜 친일파가 문제인가.” 『내일을 여는 역사』 여름호.
- 정근식 등. 2003. “과거청산, 어디까지 그리고 어디로(좌담).” 『기억과 전망』 가을호.
- 정태현. 2007. “불완전하지만 의미있는 역사정리의 첫걸음.” 『역사와 현실』 64.
- 정해구. 2010. “한국민주주의의 전개와 그 특징.” 한국정치연구회 편, 『다시 보는 한국민주화운동』. 선인.
- 조세열. 2010. “친일인명사전 편찬의 쟁점과 의의.” 『역사비평』 여름호.
- 최장집. 2002. 『민주화 이후의 민주주의』. 후마니타스.
- 친일반민족행위자재산조사위원회. 2010. 『친일재산조사위원회 백서』.
-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 2009.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 보고서』 I-IV.
- 허 중. 2003. 『반민특위의 조직과 활동』. 선인.
- 君島和彦. 1988. “조선에 있어서 전쟁동원체제의 전개과정.” 『일제말기 파시즘과 한국사회』. 청아.
- 宮田節子. 1997. 『朝鮮民衆과 ‘皇民化’ 政策』. 일조각.

투고: 2011.4.4    심사: 2011.4.27    확정: 2011.5.16